

문화예술진흥기금
금융기관 선정기준

2007.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금융기관선정기준

제정 2007. 12. 31.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기준은 운용지침 제7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접투자”라 함은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 운용회사 및 간투법 제 1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위탁운용사”)
 - 나. 간투법 제 26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회사로 등록한 자(“이하 판매회사”)
3. “위탁펀드”라 함은 회사가 자금의 운용을 위해 외부 간접투자기관에 운용을 위탁한 펀드를 말한다.
4.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말한다.

제 3조 (연간투자계획) ①연간자산운용계획서에 연간투자계획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②연간투자계획에는 투자계획, 간접투자기관 선정 및 자금배분에 관한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연간투자계획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또는 연간자금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2장 은행의 선정

제 4조 (은행의 선정시기) 은행은 연간 투자계획에 따라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중에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조 (은행 선정절차) ①은행 선정은 별표1[은행 선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⑤제1항에 의한 선정된 은행에 대하여는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별 배분기준 및 투자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등급별 배분기준]

등급	등급배분	투자한도	
		그룹별 한도	개별기관별 한도
A	평가순위 상위 3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4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30%이내
B	평가순위 상위 30%~70% 이내	전체운용금액의 6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20%이내
C	평가순위 상위 70%초과	예탁배제	예탁배제

※ 상위 %에 해당하는 은행 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계산

제 3장 위탁운용사의 선정

제 6조 (위탁운용사의 선정시기) 위탁운용사는 연간 투자계획에 따라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중에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7조 (위탁운용사 선정절차) ①위탁운용사는 제안서 심사와 과거 운용성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선정은 별표1[자산운용사 선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점 상위사 순으로 운용사를 선정한다.

③제 2호의 규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결과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 후 운용사의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한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운용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운용 중인 위탁펀드와 신규 위탁펀드의 자금을 기존운용사에 배정하기 위해 운용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2항의 위탁운용사 선정절차에 준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선정 방법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전체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평가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별 배분기준 및 투자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등급별 배분기준]

등급	등급배분	투자한도	
		그룹별 한도	개별기관별 한도
A	평가순위 상위 3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4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30%이내
B	평가순위 상위 30%~70% 이내	전체운용금액의 6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20%이내
C	평가순위 상위 70%초과	예탁배제	예탁배제

※ 상위 %에 해당하는 운용사 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계산

제 4장 판매회사의 선정

제 8조 (판매회사의 선정시기) 판매회사는 연간 투자계획에 따라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중에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9조 (판매회사 선정절차) ①판매회사 선정은 별표1[판매회사 선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⑤제1항에 의해 선정된 판매회사에 대하여는 전체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평가 순위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분류기준별 배분기준 및 투자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등급별 배분기준]

등급	등급배분	투자한도	
		그룹별 한도	개별기관별 한도
A	평가순위 상위 3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4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30%이내
B	평가순위 상위 30%~70% 이내	전체운용금액의 6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20%이내
C	평가순위 상위 70%초과	예탁배제	예탁배제

※ 상위 %에 해당하는 판매사 수가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절사하여 계산

제 4장 보 칙

제10조 (선정기준의 수정및변경) 금융기관 선정기준, 평가방법, 연간 금융기관 선정 Pool 등의 수정 및 변경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또는 변경토록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급작스러운 금융환경의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기관선정관련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금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금융기관 평가기준

가. 은행

【 1차 선정기준 (재무안정성 평가) 】

평가 항목	배점 비율(%)	비고
자기자본비율	40	총점 기준으로 등급 구분 (A, B, C등급)
신용등급	30	
무수익여신비율	10	
총자산이익률	10	
총자산규모	10	

【 2차 선정기준 (수익성 평가) 】

평가 항목	배점 비율(%)	비고
제시 금리	100	연간Pool로 선정된 A, B등급 은행 대상

※ 제시금리 : 평가시점에 각 금융기관이 제시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나. 판매사

【 1차 선정기준 (재무안정성 평가) 】

평가 항목	배점 비율(%)	비고
자본금 규모	40	총점 기준으로 등급 구분 (A, B, C등급)
자기자본이익률	30	
자산부채비율	20	
영업용순자본비율	10	

【 2차 선정기준 】

평가 항목	배점 비율(%)	비 고
제안 상품	100	연간Pool로 선정된 A, B등급 판매사 대상

다. 자산운용사

【 1차 선정기준 (재무안정성 평가) 】

유 형	운용규모	비 고
주식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주식형 수탁고 5천억이상	총점 기준으로 등급 구분 (A, B, C등급)
채권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채권형 수탁고 5천억이상	
주식혼합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주식혼합형 수탁고 2천억이상	
채권혼합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채권혼합형 수탁고 3천억이상	
해외주식형	총수탁고 1조원이상, 해외주식형 수탁고 5천억이상	
공통	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제외	

【 2차 선정기준 (운용성과 평가) 】

평가 항목	배점 비율(%)	비 고
BM대비 초과수익률	80	1차 선정 결과 A, B등급 운용사 대상
BM대비 초과위험	20	

【 3차 선정기준 (정성 평가) 】

평가 항목	배점 비율(%)	비 고
연기금 운용경험	10	2차 선정 결과 A등급 운용사 대상
자금운용프로세스	30	
운용철학 및 투자전략	40	
기금 지원서비스	20	